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1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문진석 · 주철현 · 박용갑
황운하 · 이정문 · 안태준
황명선 · 김종민 · 서왕진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 중 “제조하는 자”를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또는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제조에”를 “제조와 재활용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보”를 “정보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로 한다.

②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호의4 중 “제13조의6제1항”을 “제1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정보”를 “정보 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 -----.</p>
<p>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의3. (생략)</p> <p>1의4. <u>제13조의6제1항</u>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u>정보</u>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p> <p>2. ~ 19. (생략)</p>	<p>제66조(벌칙) ----- ----- -----.</p> <p>1. ~ 1의3. (현행과 같음)</p> <p>1의4. <u>제13조의6제1항 또는 제2항</u>----- -----<u>정보 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 정보</u>----- -----</p> <p>2. ~ 19. (현행과 같음)</p>